

경주지부 사업장별 코로나 19 협의 합의 사항(모범 안)

구 분	결과	코로나 19 방역지침		
		검사기간	격리기간	비고
밀접접촉자	확진시	PCR검사 유급휴가	유급휴가 [7일격리]	PCR검사 음성인 경우 8일차 회사 복귀 (검사비용 회사 부담)
	미확진시	PCR검사 유급휴가	접종완료자: 수동감시 (정상출근) [7일간 수동감시]	회사 출근 전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업무시작 (회사 자가진단키트 대상자 배포)
			접종미완료자(정부지정격리) [유급휴가 7일 격리]	PCR검사 음성인 경우 8일차 회사 복귀 (검사비용 정부지원)
간접접촉자 2차 접촉자 유증상자(의심자)	확진시	PCR검사 유급휴가	유급휴가 [7일격리]	PCR검사 음성인 경우 8일차 회사 복귀 (검사비용 회사 부담)
	미확진시		X	
확진자 동거인		PCR검사 유급휴가	확진자 격리기간 동일 격리 [7일격리]	PCR검사 음성인 경우 8일차 회사 복귀 (검사비용 회사 부담)
회사 내 확진자 발생시	1. 보건당국 요청 방역 실시 또는 자체 방역 실시 2. 사내 밀접 접촉자 분류기준에 따라 즉시 격리 조치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(검사 당일 유급휴가) 그 외 조합원들 본인 희망 경우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업무복귀			
밀접접촉자: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, 노출력(접촉장소, 접촉기간 등) 고려하여 보건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 통보 받은자				< 사내 밀접 접촉자 분류기준 > - 흡연, 커피 : 휴게 공간 2미터 이내 대화 - 밀폐공간 : 마스크 미착용 10분 이상 대화 - 음식물 나누어 먹기 - 2미터 이내 작업공정 근무자
접종완료자: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자				
간접접촉자: 보건당국 외 기관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인원 (예: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 전수검사_ 교육부 등)				
2차접촉자: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과 접촉한 인원				
유증상자 : 발열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발현되어 진료를 신기한 인원				
수동감시자: KF94착용 및 샤워실/공동 사용시설 사용금지, 식사 등 직원들과의 접촉 최소화				
유급휴가 처리한 경우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개별신청 불가				
격리 기간 및 해제일은 보건당국 지침을 준수하나 변동가능				